



독일 연방정보보호법(2)

I. 들어가며

지난 호에서는 독일 연방정보보호법의 입법과정과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연방정보보호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다.

제1장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다. 법률의 목적 및 적용범위, 공공 및 비공공 부문의 의의, 그밖의 개념에 대한 정의, 정보의 회피 및 정보의 최소화 원칙, 정보의 수집·가공 및 이용의 허용, 동의, 외국에로의 개인관련 정보의 전달, 고지의무, 정보보호를 위한 수탁자, 손해배상 등에 대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II. 구체적 내용

1. 법률의 목적 및 적용범위

제1조는 법률의 목적 및 적용범위(Zweck und Anwendungsbereich des Gesetzes)에 관한 것이다. 동 법의 목적은 개인과 관련한 정보의 집

근을 통해 그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부터 개개인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동 법은 다음을 통해 행하여지는 개인과 관련한 정보의 수집, 가공 및 이용에 적용된다. 즉, ① 연방의 공공 부문을 통해서, ② 정보보호가 주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있지 않은 때 그리고 공공 부문이 a) 연방법을 수행하거나 또는 b) 사법기관으로서 활동하고 그리고 행정사건에 관한 것이 아닌 때에는 주의 공공 부문을 통해서, ③ 비록 정보의 수집, 가공 또는 이용이 단지 개인적인 또는 가족의 활동을 위해 행한 것이라 할지라도, 비공공 부문이 정보가공시설의 투입에 의해 정보를 가공하거나, 이용하거나 또는 이를 위해 수집하거나 또는 정보를 자동화된 기록에서 또는 그것으로부터 가공하거나, 이용하거나 또는 이를 위해 수집하거나 하는 때에는, 비공공 부문을 통해 행하여지는 경우이다.

개인 관련 정보의 공개를 포함한 개인관련 정보에 대한 연방의 또 다른 법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이들 규정은 동 법의 규정들에 우선한

다. 법적인 비밀유지 준수에 대한 의무 또는 법률상의 규정에 근거하지 않는 직업상의 또는 특별한 직무상의 비밀 유지에 대한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동 법의 규정들은 사실관계의 조사에 있어 개인 관련 정보가 가공되는 범위에서, 행정 절차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또한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에 또는 유럽경제구역에 관한 협약 체결국에 있는 책임 있는 부문이 개인관련 정보를 국내에서 수집, 가공하거나 또는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록 이러한 것이 국내 거주에 의해 비롯된 경우일지라도, 적용되지 않는다. 동 법은 유럽연합의 회원국에 또는 유럽 경제구역에 관한 협약의 체결국에 있지 아니한 책임 있는 부문이 국내에서 개인관련 정보를 수집·가공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러나 정보보유자가 단지 통과 목적으로 국내로 들어오게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공공 및 비공공 부문

제2조는 공공 부문 및 비공공 부문(Oeffentlich und nicht-oeffentliche Stellen)에 관한 것이다. 연방의 공공 부문이란 행정관청, 사법기구 그리고 또 다른 연방과 독립된 기관의 공공법상 조직된 영조물, 그들의 법적 형식과 관계없이 그들의 단체와 같은 공법의 조직체와 재단 등이다. 공공 부문으로서 우편법에 따라 전속적인 권리가 그들에게 귀속되는 경우, 특수재산인 독일 연방우정청에서 법률에 의해 생겨난 기업에 적용된다.

각주의 공공 부문이란 행정관청, 사법기구 그리고 공법상 조직된 주의 영조물, 공동체, 공동단체 그리고 그의 법 형식에 관계없이 공법상의 단체와 마찬가지로 그밖에 주의 감독 하에 있는 공법상의 법인 등을 말한다. 공공 행정의 임무를 안고 있는 연방과 주의 공공 부문의 사법상의 단체는 비공공 부문에의 참여와 관계없이 다음의 경우에 연방 공공 부문으로서 간주된다. 즉 ① 주의 영역을 넘어 활동하는 경우, ② 연방에 비율의 절대 과반수 이상이 속하는 경우 또는 ③ 절대 다수가 표결에 찬성하는 경우, 또는 ④ 다른 경우에 주의 공공 부문으로서 간주되는 경우 등이다.

비공공 부문은, 이들이 본조 제1항 내지 제3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연인, 법인, 단체 그리고 사법상의 또 다른 인적 결합체 등을 말한다. 비공공 부문이 공공행정상의 임무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그 범위에서 동 법의 의미에 따른 공공 부문이라 하겠다.

3. 그 밖의 개념 규정

제3조는 동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밖의 개념에 대한 정의(Weitere Begriffsbestimmung)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 ① 개인관련 정보란 특정된 또는 특정할 수 있는 자연인의 인적 또는 사실적인 관계에 대한 개별적인 진술을 말한다.
- ② 자동화된 가공이란 정보가공시설의 투입에 의해 개인 관련 정보를 수집, 가공 또는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화되지 않은 정보



란 각각의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특정된 징표에 따라 접근할 수 있고, 이용될 수 있는 자동화되지 않은 개인관련 정보의 집적을 말한다.

- ③ 수집이란 관련 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을 말한다.
- ④ 가공이란 개인관련 정보의 저장, 변경, 전달, 폐쇄 그리고 삭제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여기에서 적용되는 절차에도 불구하고 다음을 의미한다.

저 장 : 계속적인 가공 또는 이용을 목적으로 정보소유자에 대한 개인관련 정보의 이해, 감지 또는 보존

변 경 : 저장된 개인관련 정보의 내용상의 재구성

전 달 : 저장된 또는 정보가공을 통해 얻어진 개인관련 정보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3자에게 알리는 것, 즉, a) 정보가 제3자에게 계속해서 넘겨지거나 또는 b) 제3자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정보의 조사를 위해 또는 소환을 위해 조사하거나 소환하는 경우

폐 쇄 : 정보의 계속적인 가공이나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저장된 개인관련 정보에 표시를 함

삭 제 : 저장된 개인 관련 정보를 알 수 없도록 만들

- ⑤ 이용이란, 가공이 아닌 범위에서, 개인관련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⑥ 익명화라 함은 다음과 같은 방법, 즉 개인적인 또는 사실적인 관계에 대한 개별진술이 시간, 경비 그리고 노동력에 있어 특정된 또는 특정 가능한 자연인에게 더 이상 귀속시킬 수 없도록 하는 또는 단지 상황에 적합하지 않는 과잉지출로 귀속될 가능성이 있는 방법으로, 개인관련 정보를 변경하는 것이다. 이는 관련 당사자의 특정을 제외하거나 또는 본질적으로 어렵게 할 목적으로 표식을 통해 이름과 다른 동일성 징표를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 ⑦ 책임 있는 부문이란 스스로를 위해 개인관련 정보를 수집하거나, 가공하거나 또는 이용하거나 또는 위탁받은 타인을 통해 이와 같은 것이 실행될 수 있는 개인 또는 부문을 말한다.

- ⑧ 수령인은 정보를 보유하는 각각의 개인 또는 부문이다. 제3자는 책임 있는 부문의 범위 밖에 있는 각 개인 또는 부문을 말한다.

- ⑨ 특별한 종류의 개인관련 정보란 인종적인 기원, 정치적인 신념, 종교적 또는 철학적인 확신, 노동조합에의 소속, 건강, 성생활 등에 대한 진술을 말한다.

- ⑩ 이동성 개인관련 저장 및 가공매체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전달자이다. 즉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되어야 하고, 개인관련 정보에 대해 저장 이외에 행하고 있는 또는 다른 부문을 통해 자동화되어 가공되어질 수 있으며 그리고 관련 당사자가 단지 매체의 사용을 통해 이러한 가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4. 정보의 회피 및 정보의 최소화

제3a조에서는 정보의 회피 및 정보의 최소화(Datenvermeidung und Daten-sparsamkeit)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정보가공시스템의 형성과 선택은 다음의 목적에 있어서, 즉 가급적 개인관련 정보를 수집, 가공 또는 이용하지 않도록 또는 이를 최소화한다는 목적에 맞게 실행되어야 한다. 특히 익명화 및 가명화의 가능성은, 이것이 가능하고 그에 대한 지출이 달성하려는 보호목적과 상충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이용될 수 있다.

5. 정보의 수집·가공 및 이용의 허용

제4조는 정보의 수집·가공 및 이용의 허용(Zulaessigkeit der Datenerhebung, -verarbeitung und -nutzung)과 관련한 것이다. 개인과 관련한 정보의 수집, 가공 및 이용은, 동 법 또는 다른 법규정이 이를 허용하거나, 지시하거나 또는 관련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또한 개인관련 정보는 관련 당사자로부터 수집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의 협력 없이도 수집될 수 있다. 즉, ① 법규정이 이를 예정하고 있거나 또는 강제적 조건이 있는 경우, ② 그들이 방식에 따라 수행해야 할 행정업무 또는 업무목적이 다른 개인들이나 부문에게서 수집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관련 당사자에 대한 수집에 있어 상당하지 않은 지출이 요구되는 경우 등이다.

개인관련 정보가 관련 당사자에게서 수집된 경우, 관련 당사자가 이미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그는 책임 있는 부문으로부터 다음에 대해 보고받아야 한다. 즉 ① 책임 있는 부문의 동일성, ② 수집·가공 또는 이용의 목적규정 그리고 ③ 개별적 상황에 의해 관련 당사자에 대한 전달이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라면, 수령인의 범위 등이다.

개인관련 정보가 정보제공에 대한 의무가 있는 법 규정에 의해 관련 당사자에게서 수집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이 법적 이익의 보호를 위한 조건이라면, 관련 당사자는 이에 대해서 그리고 그밖에 그의 진술의 자유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개별적 사건의 상황에 따라 요구되거나 또는 요청에 따른 경우라면, 법 규정에 대해 그리고 진술의 거부 결과에 대해 그에게 설명되어야 한다.

6. 동의

제4a조는 동의(Einwilligung)에 관한 것이다. 동의는 관련 당사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른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동의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다른 형식이 적합한 경우가 아닌 한, 서면의 형식을 요한다. 동의가 다른 의사표시와 함께 서면으로 행하여져야 하는 경우에, 이는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학문적 연구의 범위에서는, 가령 서면 형식에 의해 특정된 연구목적이 상당히 훼손되어지는 경우라면, 본조 제1항 3문의 의미에 따른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본조 제1항 2문에 따른 지시와 특정된 연구목적에 대해 상당한 침해를 발생케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



특별한 종류의 개인관련 정보가(제3조 제9항) 수집, 가공, 이용되어지는 경우에,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가 행하여져야 한다.

7. 국가 간의 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외국으로의 개인관련 정보의 전달

제4b조에서는 국가 간의 부문에서처럼 외국으로의 개인관련 정보의 전달(Uebermittlung personenbezogener Daten ins Ausland sowie ueber- oder zwischen- staatliche Stellen)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가에 있는 부문, 유럽경제구역에 대한 협정의 다른 계약국에 있는 부문 및 유럽공동체의 기구와 시설에로의 개인관련 정보의 전달에 대해서, 전달이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유럽공동체의 법의 적용범위에 있는 활동 범위에서 비롯하는 때에는, 이러한 전달에 적용되는 법률 및 합의에 따라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그리고 제28조 내지 제30조가 적용된다.

그 밖의 외국 또는 국가 간의 부문과 마찬가지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유럽공동체의 법의 적용범위에 있는 활동영역에서 비롯되지 아니 하는 한 개인관련 정보의 제1항에 따른 부문으로의 전달에 대해서는 제1항이 준용된다. 전달은, 관련 당사자가 전달의 제외에 대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갖는 경우에, 특별히 앞서 언급된 부문에 있어서 적합한 정보보호기준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지된다. 2문은 다음의 경우, 즉 연방의 공공 부문의 고유한 임무의 수행을 위해 전달이 강제적인 이유로부터 또는 인류

적인 조치를 위해 위기극복 또는 분쟁방해의 영역에서 국제적인 또는 국가 간 의무의 방어 또는 이행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보호기준의 적합성은, 정보전달 또는 정보전달의 범위에서 중요한 모든 상황의 고려 하에 판단된다. 특별히 정보의 종류, 목적규정, 계획된 가공의 기간, 출처지역 및 중국규정지역, 수령인에게 적용되는 지역규정 및 안전보장조치와 같은 관련 수령인에게 적용되는 법규범들이 도출될 수 있다.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전달하는 부문은 관련 당사자에게 그의 정보의 전달에 대해 보고한다. 이는, 만약 그가 다른 방법으로 알게 된 것을 고려해야만 하는 경우 또는 고지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게 하는 경우 또는 그밖에 연방 또는 각 주의 안녕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전달의 허용에 대한 책임은 전달하는 부문이 부담한다. 정보가 전달된 부문은 이 정보가 전달되어지는 이행에 대한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8. 예외

제4c조는 예외(Ausnahmen)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유럽연합의 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에서 개인관련 기록의 제4b조 제1항에서 언급된 부문과는 다른 부문으로의 개인정보의 전달은, 비록 그들에게 있어 적당한 정보보호기준이 보장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음의 경우에 허용된다. 즉 ① 관련 당사자가 동의를 한 경우, ② 관련 당사

자와 책임 있는 부문 간의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또는 관련 당사자에 의해 계약상의 조치의 실행을 위해 전달이 요구되는 경우, ③ 관련 당사자의 이익에 있어 책임 있는 부문으로부터 제3자와 체결되거나 체결되어야 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 전달이 필요한 경우, ④ 중대한 공적 이익의 보존을 위해서 또는 법원에서 권리 청구권의 주장·실행 또는 변호를 위해서 전달이 필요한 경우, ⑤ 관련 당사자의 생활상 중요한 이익의 보존을 위해 전달이 요구되는 경우 등이다.

9. 고지의무

제4d조에서는 고지의무(Meldepflicht)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자동화된 가공의 절차는 우편 및 통신기업으로부터와 마찬가지로 관할권 있는 감독관청의 비공공의 책임 있는 부문으로부터 그리고 연방의 공공의 책임 있는 부문으로부터 정보보호를 위한 연방수탁자에게 제4e조에 따라 고지되어야 한다.

고지의무는 책임 있는 부문이 정보보호에 관한 수탁자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소멸하게 된다. 고지의무는 더욱이 다음의 경우, 즉 책임 있는 부문이 고유의 목적을 위해 개인관련 정보를 수집, 가공 또는 이용하는 경우, 여기에서 최소한 4명의 종업원이 개인관련 정보의 수집, 가공 또는 이용에 종사하고 그리고 관련 당사자의 동의가 존재하거나 또는 관련 당사자와의 계약관계상의 또는 계약에 유사한 신뢰관계의 목적 규정의 수집, 가공 또는 이용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소멸하게 된다. 본조 제2항과 제3항은 다음의 경우, 즉 업무에 적합한 개인관련 정보가 ① 전달의 목적을 위해서, ② 익명화된 전달의 목적으로 저장되어지는 자동화된 가공과 관련한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화된 가공이 관련 당사자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특별한 위험을 보이는 경우, 가공을 시작하기에 앞서 그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된다. 사전통제는 다음의 경우, 비록 법적인 의무 또는 동기가 있더라도 또는 관련 당사자의 계약관계 또는 계약유사의 신뢰관계상의 목적 규정의 수집, 가공 또는 이용에 기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실행되어진다. 즉 특별한 종류의 개인관련 정보가(제3조 제9항) 가공되는 경우 또는 개인관련 정보의 가공이, 그의 능력·업적 또는 행위를 포함하여 관련 당사자의 인격을 평가하도록 특정된 경우 등이다.

정보보호를 위해 위임을 받은 수탁자는 사전통제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수탁자는 제4g조 제2항 1문에 따른 감독의 수령에 대하여도 사전통제권을 갖는다. 또한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감독관청에 대해서, 우편 그리고 통신기업의 경우에는 정보보호를 위한 연방수탁자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10. 고지의무의내용

제4e조는 고지의무의 내용(Inhalt der Meldepflicht)과 관련된 것이다. 자동화된 가공의 절차에 대해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신고되어야 한다.



- ① 성명 또는 책임 있는 부문의 기업
- ② 소유자, 이사, 영업책임자 또는 그 밖의 법률상 또는 기업의 정관에 의해 지명된 책임자 그리고 정보가공의 이행을 위해 위탁받은 개인
- ③ 책임 있는 부문의 주소
- ④ 정보의 수집·가공 또는 이용의 목적 규정
- ⑤ 관계된 개인그룹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보 또는 정보범위의 기술
- ⑥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수령자 또는 수령자의 범위
- ⑦ 기록 삭제를 위한 규정기한
- ⑧ 제3국에게 예정된 정보전달
- ⑨ 제9조에 따른 기준들이 가공의 보장 또는 담보를 위해 적합한지의 여부를 잠정으로 판단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일반적인 기술 등

11. 정보보호를 위한 수탁자

제4f조는 정보보호를 위한 수탁자(Beauftragter fuer den Datenschutz)에 관한 것이다. 개인 관련 정보를 자동화하여 수집, 가공하거나 또는 이용하는 공공 부문 및 비공공 부문은 정보보호를 위해 서면으로 수탁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비공공 부문은 활동할 것을 인정한 후 늦어도 한 달 내에는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개인관련 정보가 다른 방법에 의해 수집되거나 가공되거나 이용되어지고 그리고 보통의 경우 최소 20명이 종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최고 4명의 종업원이 개인관련 정보의 수집,

가공 또는 이용에 종사하는 비공공 부문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공공 부문의 구축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복수 영역을 위해 정보보호를 위한 연방수탁자의 임명이 가능하다. 비공공 부문이 사전통제 하에 있거나 또는 전달 또는 익명화된 전달의 목적으로 규정에 부합하여 개인관련 정보를 수집, 가공하거나 또는 이용하려는 자동화된 가공을 시도하려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수에 관계없이 정보보호를 위한 연방수탁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그의 임무의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성과 성실성을 갖춘 자는 정보보호를 위한 연방수탁자로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임무는 책임 있는 부문 이외의 자가 임명될 수 있다. 공공 부문은 그의 감독관청의 동의 하에 다른 공공 부문의 고용인을 정보보호를 위한 연방수탁자로 임명할 수 있다.

정보보호를 위한 연방수탁자는 직접적으로 공공 또는 비공공 부문의 책임자의 지시 하에 놓이게 되며, 그는 정보보호 영역에 대한 그의 전문성을 행함에 있어 지시 없이 행하게 된다. 그는 그의 임무의 수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 정보보호를 위한 연방수탁자의 임명은 민법 제626조의 준용에 의해, 비공공 부문의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요구에 의해 철회될 수 있다.

정보보호를 위한 수탁자는, 그가 관련 당사자로부터 면제받지 않는 한, 관련 당사자에 대한 추론이 허용되는 상황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관련 당사자의 동일성에 대해서 침묵할 의무를 진다. 공공 및 비공공 부문은 정보보호를 위한 수탁자의 임무수행 시 수탁자를 도와야 하며 그

리고 특히 그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간·시설·기기 및 물자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관련 당사자는 언제라도 정보보호를 위한 수탁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

12. 정보보호를 위한 수탁자의 임무

제4g조는 정보보호를 위한 수탁자의 임무(Aufgaben des Beauftragten fuer den Datenschutz)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정보보호를 위한 수탁자는 동 법의 준수 및 정보보호에 관한 다른 규정의 준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정보보호를 위한 수탁자는 의심스런 경우에는 책임 있는 부문의 정보보호 통제를 위해 관찰권 있는 관청에 문의할 수 있다. 특별히 그는 다음, 즉 그의 도움으로 개인관련 정보가 가공되어야 하는 규정에 적합한 정보 가공 프로그램의 적용을 감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그에게 개인관련 정보의 자동화된 가공에 대해 즉시 보고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관련 정보의 가공에 있어 활동하는 자들이 정보보호를 위한 다른 규정과 마찬가지로 이 법률의 규정 및 그 때마다의 정보보호의 특별한 필요성과 함께 적합한 조치들에 의해 신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보호를 위한 관청의 수탁자와 관청의 책임자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최상위의 연방관청이 결정한다.

13. 정보비밀

제5조는 정보비밀(Datengeheimnis)에 관한

것이다. 정보가공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개인 관련 정보를 권한 없이 수집하거나, 가공하거나 또는 이용하는 것이 거부된다(정보비밀). 이러한 자들은, 이들이 비공공 부문에 종사한다면, 그들의 활동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정보비밀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된다. 정보비밀은 그들의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존속한다.

14. 관련 당사자의 절대적인 권리

제6조는 관련 당사자의 절대적인 권리(Unabdingbare Rechte des Betroffenen)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정보제공(제19조, 제34조) 및 정정·삭제 또는 폐쇄(차단)(제20조, 제35조)에 대한 관련 당사자의 권리는 법률행위에 의해 제외되거나 제한될 수 없다. 관련 당사자의 정보가 복수의 부문이 정당하게 저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장된 경우라면, 그리고 관련 당사자가 어떤 부문이 정보를 저장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면, 그는 이 부문들의 각각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 관련 당사자는 계속적인 진행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각 부문으로부터 보고받아야 한다. 재무행정의 공공 부문과 마찬가지로 제19조 제3항에서 언급된 부문, 검찰관청 그리고 경찰은, 이들이 감시와 검사를 위한 신고규정의 적용범위에서 그들의 법률상의 임무의 수행을 위해 개인관련 정보를 저장하는 경우라면, 관련 당사자 대신 정보보호를 위한 연방수탁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그 이상의 절차는 제19조 제6항에 따르게 된다.



15. 자동화된 개별 결정

제6a조는 자동화된 개별 결정(Automatisierte Einzelentscheidung)에 대한 것이다. 관련 당사자에게 법적인 결과를 가져오거나 그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정은 개별적 징표의 평가에 기여하는 개인관련 정보의 자동화된 가공에만 근거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결정이 계약관계 또는 그 밖의 권리관계의 체결 또는 이행의 범위에서 비롯하고 관련 당사자의 요구에 대해 허용되는 경우 또는 관련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의 보존이 적합한 조치들에 의해 보장되어지고 관련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부문으로부터 제1항의 의미에서 결정준제의 사실이 전달되는 경우이다. 적합한 조치로서 특별히 관련 당사자가 그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책임 있는 부문은 그의 결정을 새로이 조사할 의무가 갖는다.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고지에 대한 관련 당사자의 권리는 또한 그에 관련된 정보의 자동화된 가공의 논리적 구축으로 확장된다.

16. 광학적 전자적 시설을 갖춘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간의 관찰

제6b조는 광학적 전자적 시설을 갖춘 공개적으로 접근가능한 공간의 관찰(Beobachtung oeffentlich zugaeinglicher Raeume mit optisch-elektronischen Ein-richtungen)에 관한 것이다. 광학적 전자적 시설을 갖춘 공개적으로 접근가능한 공간의 관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

된다. 즉 ① 공공 부문의 임무 수행을 위해, ② 주 거불가침권의 인식을 위하여 또는 ③ 구체적으로 확정된 목적을 위해 정당한 이익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관련 당사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능가하는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관찰상태와 책임 있는 부문은 적합한 기준에 따라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본조 제1항에 의해 수집된 정보의 가공과 이용은 추구하는 목적에 의 도달을 위해 필요하고 그리고 관련 당사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능가하게 하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 경우 허용된다. 비디오관찰에 의해 수집된 증거가 특정 개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 제19a조 및 제33조에 의해 가공 및 이용에 대해 보고되어야 한다.

정보는, 목적달성을 위해 더 이상 요구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관련 당사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계속적인 저장에 반하는 경우라면, 즉시 삭제되어야 한다.

17. 이동성 개인관련 정보의 저장 및 가공매개체

제6c조는 이동성 개인관련 정보의 저장 및 가공매개체(Mobile personenbezogene Speicher- und Verarbeitungsmedien)에 관한 것이다. 이에 관련된 부문은 관련 당사자에게, 관련 당사자가 이미 알지 못한 경우라면, 다음에 대해, 즉 ① 관련 당사자의 동일성과 주소, ② 가공될 개인관련 정보의 종류를 포함하여 매개체의 기능방법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형

식, ③ 관련 당사자가 제19조, 제20조 및 제35조에 따른 그의 권리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그리고 ④ 매개체의 상실 또는 파괴 시에 행하여지게 되는 조치들에 대하여 언급되어야 한다.

제1항에 의해 의무를 지게 된 부문은, 정보제공에 대한 권리를 피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기와 시설들이 적합한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매개체로부터 정보가 공이 해소되는 통신과정은 관련 당사자가 이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18. 손해배상

제7조는 손해배상(Schadensersatz)에 관한 것이다. 책임 있는 부문이 정보보호를 위해 동법 또는 또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지 않거나 또는 부당한 개인관련 정보의 수집, 가공 또는 이용을 통해 관련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책임 있는 부문 또는 그의 이행자는 관련 당사자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손해배상의무는 책임 있는 부문이 개별적 상황에 따라 주어진 주의를 기울인 경우라면 소멸한다.

19. 공공 부문에 의한 자동화된 정보가공에서의 손해배상

제8조는 공공 부문에 의한 자동화된 정보가공에서의 손해배상(Schadensersatz bei automatisierter Datenverarbeitung durch oeffentliche Stellen)에 관한 것이다. 책임 있는 공공 부문이

정보보호를 위해 동법 또는 또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지 않거나 또는 부당하게 자동화된 개인관련 정보의 수집, 가공 또는 이용을 통해 관련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의 이행자는 관련 당사자에게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인격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재산권인 손해는 관련 당사자에게 현금으로 배상되어야 한다.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는 전체적으로 250,000 DM을 넘지 못한다. 복수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복수의 자에 대해 동일한 사건으로 인해 이행되어지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손해배상급부는 그의 총액이 최고액에 달하는 범위에서 감축된다. 자동화된 가공 시에 복수의 부문이 정당하게 저장할 수 있고 피해자가 저장하려는 부문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각각의 부문이 책임을 진다.

관련 당사자의 공동과실과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민법 제254조 및 제852조가 준용된다.

20. 기술적인 그리고 관리상의 조치

제9조는 기술적인 그리고 관리상의 조치(Technische und organisatorische Massnahmen)에 관한 것이다. 스스로에 의해 또는 위임에 의해 개인 관련 정보를 수집·가공 또는 이용하는 공공 그리고 비공공 부문은, 동법 규정의 실현을 위해, 특히 이 법에서 언급한 요청에 대한 첨부(부록)사항을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적인 그리고 관리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



치는 그에 따른 지출이 추구하는 보호목적에 상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요구된다.

21. 정보보호 심리절차

제9a조는 정보보호 심리절차(Datenschutzaudit)에 관한 것이다. 정보보호와 정보의 안전보장의 개선을 위해 정보가공시스템과 정보가공프로그램의 제공자와 정보를 가공하는 부문은 기술적 시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정보보호 컨셉을 독립적인 그리고 허용이 가능한 감정인을 통해 검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사받고 평가받을 수 있다. 감정인의 선택과 허용과 마찬가지로 검사 및 평가 그리고 절차에 대한 상세한 요구사항은 특별법에 의해 규율된다.

22. 자동화된 회수절차의 실행

제10조는 자동화된 회수절차의 실행(Einrichtung automatisierter Abrufverfahren)에 관한 것이다. 회수를 통한 개인관련 정보의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자동화된 절차의 실행은 이러한 절차가 관련 당사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의 고려와 참여하고 있는 부문의 임무 또는 업무목적에 대한 고려 하에 적당한 경우에 허용된다. 개별적인 회수의 허용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참여하고 있는 부문은 회수절차의 허용이 통제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회수절차의 이유와 목적, 전달되는 제3자, 전달될 정보의 종류, 제9조에 의해 요구되는 기술적 그리고 조직상의 조치들을 서면으로 확정해야 한다.

회수절차의 실행에 대해서 제12조 제1항에서 언급된 부문들이 참여한 경우에는 정보보호를 위한 연방수탁자는 본조 제2항에 따른 확정의 통지에 대하여 보고받아야 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19조 제3항에서 언급된 부문들이 참여한 회수절차의 준비는, 저장하려는 그리고 회수하는 부문에 관할권이 있는 연방 및 각 주의 관청이 동의한 경우에만, 단지 허용된다. 개별적 회수의 허용에 대해서는 전달되어야 하는 제3자가 책임을 진다. 저장하려는 부문은, 그에 대한 동기가 있는 경우, 회수의 허용에 대해 조사한다. 저장하려는 부문은 개인관련 정보의 전달이 최소한 적합한 시험절차에 의해 확인되었거나 조사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의 회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전 고지, 허용 또는 유상급부의 지급 없이 또는 사전 고지, 허용 또는 유상급부의 지급 후에라도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라면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것이다.

23. 위임된 개인 관련 정보의 수집 · 가공 및 이용

제11조는 위임된 개인 관련 정보의 수집 · 가공 및 이용(Erhebung, Verarbeitung der Nutzung personenbezogener Daten im Auftrag)에 관한 것이다. 개인관련 정보가 위임에 의해 다른 부문을 통해 수집되거나, 가공되거나 이용된 경우라면, 위탁자는 이 법의 규정 또는 정보보호를 위한 다른 규정의 준수에 대해 책임을 진다.

수탁자는 그에 따른 기술적인 그리고 관리상의 조치들의 적합성에 대한 특별한 고려 하에 주의 깊게 선정되어야 한다. 위임은 서면으로 행하여져야 하며, 여기에는 정보의 수집, 정보의 가공, 정보의 이용 및 기술적인 그리고 관리상의 조치와 약간의 재위임관계가 확정되어야 한다. 공공 부문의 경우에는 또한 전문 감독관청에 의해 위임될 수 있다. 위탁자는 수탁자가 행하는 기술적인 그리고 관리상의 조치들의 준수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어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가공하거나 또는 이용할 수 있다. 위탁자의 지시가 동법에 반하거나 또는 정보보호에 관한 다른 규정에 반하여 위반하려는 의도라면, 그는 이러한 사실을 즉시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III. 맺으며

이번 호에서는 제1장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에는 제2장 공공부문에서의 정보의 가공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류 승 훈

(선문대 법대 교수)